의 결 번 호	제 2019 - 14호
의 결 연 월 일	2019. 10. 11. (제 7 회)

의결사항

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(안)

(외화 단기자금 한도 상향)

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

제 출 자	위원장 박 능 후 (보건복지부 장관)
제출연월일	2019. 10. 11.

1. 의결 주문

○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(안)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2. 제안 이유

○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3억불에서 6억불로 인상하여 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, 외환시장의 충격을 완화

3. 주요 내용

○ 외화 단기자금 한도 인상을 위해 별표 3 제5호제3항 중 “3억불”을 “6억불”로 한다.

현 행	개 정 (안)
[별표3] 5. 단기자금 ①·② (생략) ③ 외화단기자금은 안정적 외화유동성 관리를 위해 운용하되,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일평잔 미화 **3억불** 한도내에서 운용한다.	[별표3] 5. 단기자금 ①·② (생략) ③ 외화단기자금은 안정적 외화유동성 관리를 위해 운용하되,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일평잔 미화 **6억불** 한도내에서 운용한다.

<별 지>

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(안)

(외화 단기자금 한도 상향)

2019. 10. 11

보건복지부

외화 단기자금 한도 인상(안)

□ 검토 배경

○ **'14년** 처음 **외화 단기자금*** **한도 설정** 후 현재까지 한도액을 **3억불로 유지**

* 美 달러로 해외투자 자금조달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

- **해외투자 증가** 및 **규모**를 감안해 **외화 단기자금 한도 인상**을 **외환당국**에 **지속적으로 요구**하였으며,
- 최근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**6억불로 인상**하는 것에 **합의**

○ 이에, **외화 단기자금 한도 인상**을 위한 **기금운용지침 개정 필요**

□ 외화 단기자금 한도 인상 효과

○ **불필요한 환전으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**

- 해외투자 **환수시, 외화 단기자금 한도 유지**를 위해 **한도를 상회**하는 금액은 **원화로 환전**하고 재투자시 **다시 달러로 환전**
-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인상하면 **한도 유지를 위한 환전 금액**이 **감소**하므로 불필요한 **거래비용 절감**

* '17.12월 감사원 감사시 외화 단기자금 한도로 인한 불필요한 환전비용 지적

○ **대규모 환전으로 인한 외환시장 충격 완화**

- **해외 대체투자 확대**에 따라 과거에 비해 **자산의 회수**(원금, 자본이득, 배당)가 **특정 시기에 집중**되는 경향이 **강해지고 있음**
- 회수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**대규모 환전이 필요**하나, 외화 단기자금 한도 인상은 **환전 규모를 줄여** 외환시장 **충격 완화 기대**

□ 외화 단기자금 한도 인상(안): 3억→ 6억불, 이후 단계적 추가인상

○ **효율적 기금운용**을 위한 **한도 수준**은 **12억불로 추정**되나, **급격한 한도 인상**이 **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**해 **단계적으로 인상**

참 고 **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(안) - 별표3**

자산별 세부투자지침(제16조 관련)

1. 국내주식

① 국내주식운용은 장기투자를 지향하고, 허용된 위험한도 안에서 기금의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.

② 국내주식의 내부운용은 사전에 투자가능종목군을 구성하고, 투자가능종목군에 포함된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며, 중장기적으로 패시브 운용(Passive Management)을 지향한다.

③ 국내주식의 위탁운용은 민간 기관의 투자기법을 활용하여 투자 스타일을 다양화하며, 액티브 운용(Active Management)을 지향한다.

2. 국내채권

① 채권운용은 장기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만기 보유와 채권종류별, 발행기관별, 계열별(회사채) 및 만기구조별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발행자의 신용과 무위험채권과의 스프레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되 일정범위 안에서 듀레이션을 조정하여 초과수익을 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공단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채권의 발행기관별, 계열별 총신용위험노출액(Total Credit Exposure)을 매년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.

3. 해외투자

① 해외투자의 목적은 국내투자를 보완하여 투자대상 확대를 통한 분산투자 효과로 자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.

② 해외투자시 외국의 우수 운용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운용 기법의 선진화를 도모한다.

③ 장기적으로 기금성숙기에 급여지급을 위한 자산매각분을 고려하여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지향하여 향후 급여지급을 위한 자산의 현금화시 국내 금융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.

④ 공단은 외환익스포져 관리현황을 매년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.

4. 대체투자

① 대체투자의 목적은 주식,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과 상이한 위험-수익 특성을 활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.

② 대체투자는 부동산, 인프라, 벤처투자, 기업구조조정조합투자, 사모투자, 헤지펀드, 자원개발, 전술적 운용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.

③ 대체투자는 약정시점에서 일정기간 분산하여 집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약정한도를 부여한다.

④ 대체투자부문 투자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단 투자위원회와는 별도의 투자의사결정기구(“대체투자위원회“)를 둔다.
⑤ 대체투자는 세부투자계획 수립, 투자실행 및 사후관리 등에 있어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조언을 참조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⑥ 공단은 새로운 투자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5. 단기자금

① 단기자금이란 연금급여 지급 또는 중장기 자산 투자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.
② 원화단기자금은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용하고,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운용기간 3개월 이내의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한다.
③ 외화단기자금은 안정적 외화유동성 관리를 위해 운용하되,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일평잔 미화 **6억불** 한도내에서 운용한다.

6. 대여거래

① 유가증권 대여거래는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실시한다.